#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529

발의연월일: 2024. 8. 2.

발 의 자: 박홍배 · 이기헌 · 이상식

민병덕 • 김현정 • 김남근

강득구・강훈식・한준호

박균택 • 김영진 • 이광희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금융기관 등이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양수금 채권 등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채무의 성립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의 예외를 두어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지급금 지급 및 근로자 신용보증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지방노동관서 체불조사를 근거로 발급된 체불임금 등확인서를 근거로 대지급금 지급 후 구상채권을 회수하고, 공단의 신용보증을 통한 금융기관의 융자 실행 후 연체사고 발생 시 금융기관에 대신 변제를 하는 대위변제 구상금의 성격으로 금융기관 등의 대여금, 구상금 채권처럼 처분문서가 명확하여 채권·채무관계의 성립에 대한사실관계가 확실함.

특히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근로자의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대지급금 지급 건수 및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신용보증 융자사업의 보증사고 발생이 급증하여 소송대상 건수는 대폭 증가하고 있고, 최근 3년간 지급명령 신청 후 송달불능에 따른 소 전환 비율 또한증가하여 절차 이용의 실익이 크므로 특례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례의 적용대상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 공단을 추가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생략하여 업무량을 경감하 고, 비용, 시간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22호를 제2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3호(종전의 제22호) 중 "제21호"를 "제22호"로 한다.

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신청된 지급명령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	제20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
명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명령) ①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	
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및 같은 법 제466조제2항 중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1. ~ 21. (생 략)	1. ~ 21.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u>22</u>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	<u>23</u>
지, 제6호의2, 제7호부터 <u>제21</u>	<u>제22</u>
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법	<u>호</u>
원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